

검암역자이르네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833-2595

주택유형	규제지역 여부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민영	비규제지역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인천·경기도·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채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없음	최초 당첨자발표일(2026.06.04.)로부터 3년 (*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없음	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05.15.(금)	2026.06.25.(목)	2026.06.30.(화)	2026.07.03.(금)	2026.07.06.(월) ~ 2026.07.07.(화) [2일간]	2026.07.08.(수) ~ 2026.07.09.(목) [2일간]

건본주택 운영 안내사항

- 건본주택 관람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25.)부터 관람 가능하며, 건본주택 관람이 어려운 고객님께서 홈페이지(<https://www.검암역자이르네.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본주택 내 주차 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 또는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이후에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에 한하여 자격확인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 등으로 건본주택 입장 및 관람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 발표 후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 방문과 관련하여 별도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사업주체로 송부한 당첨자 성명/연락처 기준)
- 검암역자이르네 건본주택 내 분양 상담전화(☎1833-2595)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 및 청약 등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문의 전화가 많아 상담전화 연결이 안될 경우가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또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에 따른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 및 관계법령을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사례 ① :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사례 ② :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 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 무순위(사후)	O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행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행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6.25.(목)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10159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인천·경기도·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5.15.(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6000162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급회 공급 주택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된 주택형으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안내

구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06.30.(화)	2026.07.03.(금)	2026.07.06.(월) ~ 2026.07.07.(화) [2일간]	2026.07.08.(수) ~ 2026.07.09.(목) [2일간]
방법	- PC·모바일 : 청약홈 (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 청약홈	- 견본주택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98번지 (검암역자이르네 견본주택, 10:00 ~ 17:00)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2조 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세대]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조부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전혼자녀 등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투기과열지구, 비청약과열지역인 인천광역시 서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비규제지역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공급계약서 및 발코니 확장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서 인지세 납부대상으로 「인지세법」 제1조에 의거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분양계약 및 발코니 확장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와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공동납부 하기로 합니다. 또한, 계약자가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구분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총 납부세액	20,000원	40,000원	70,000원	150,000원	350,000원
계약자 부담	10,000원	20,000원	35,000원	75,000원	175,000원
비고	-	-	-	아파트 공급계약	-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발표일(2026.06.04.)로부터 3년간(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적용됩니다.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공급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4-8번지 일원 (검암역세권 B-2블록)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3층 ~ 지상 25층, 5개동, 총 601세대 중 잔여 15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입주예정시기 : 2028년 12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예정)

공급대상 (민영주택)

(단위 : ㎡,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약식 표기 (타입)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분	잔여 세대수	잔여세대 동·호 내역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동	호
2026 910159	01	084.6120A	84A	84.6120	25.6016	110.2136	57.5810	167.7946	57.9311	61	101	401, 505, 601, 705, 1005, 1305, 1505, 1601, 1701, 1705, 1805, 2201, 2205, 2305, 2501, 2505
											102	401, 405, 601, 705, 801, 805, 1405, 2105
											103	301, 405, 701, 801, 805, 901, 905, 1101, 1301, 1505, 1805, 2501
											104	105, 205, 405, 505, 601, 901, 1201, 1301, 1401, 1801, 2201, 2301
											105	101, 105, 205, 301, 305, 401, 505, 601, 701, 805, 1105, 1205, 1305
	02	084.6297B	84B	84.6297	24.8431	109.4728	57.5930	167.0658	57.9433	89	101	102, 103, 202, 303, 402, 502, 503, 602, 603, 702, 803, 1002, 1202, 1203, 1303, 1702, 1902, 2102, 2202, 2203, 2502
											102	102, 202, 203, 302, 402, 403, 503, 603, 703, 802, 803, 903, 1102, 1202, 1203, 1402, 1602, 1702, 1703, 1802, 1803, 2002, 2102, 2103, 2402, 2502, 2503
											103	102, 303, 502, 503, 602, 603, 702, 703, 802, 1203, 1502, 1503, 1602, 1603, 1702, 1803, 2103
											104	104, 203, 303, 403, 404, 503, 504, 603, 604, 704, 803, 903, 2204
											105	103, 202, 203, 303, 402, 403, 602, 802, 803, 903, 1403
합계										150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약식 표기 (타입)	동, 라인	층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1차 (5%)	2차 (5%)	1차 (10%)	2차 (10%)	3차 (10%)	4차 (10%)	5차 (10%)	6차 (1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 시	계약 후 30일 이내	2026-09-10	2027-01-11	2027-05-10	2027-10-11	2028-02-10	2028-06-12	
84A	101동 1, 5호 102동 1, 5호 103동 1, 5호 104동 1, 5호 105동 1, 5호	1층	3	206,200,000	347,400,000	553,600,000	27,680,000	27,680,000	55,360,000	55,360,000	55,360,000	55,360,000	55,360,000	55,360,000	166,080,000
		2층	2	206,200,000	360,200,000	566,400,000	28,320,000	28,320,000	56,640,000	56,640,000	56,640,000	56,640,000	56,640,000	56,640,000	169,920,000
		3 ~ 4층	9	206,200,000	371,400,000	577,600,000	28,880,000	28,880,000	57,760,000	57,760,000	57,760,000	57,760,000	57,760,000	57,760,000	173,280,000
		5 ~ 9층	19	206,200,000	380,600,000	586,800,000	29,340,000	29,340,000	58,680,000	58,680,000	58,680,000	58,680,000	58,680,000	58,680,000	176,040,000
		10층 이상	28	206,200,000	387,900,000	594,100,000	29,705,000	29,705,000	59,410,000	59,410,000	59,410,000	59,410,000	59,410,000	59,410,000	178,230,000
84B	101동 2, 3호 102동 2, 3호 103동 2, 3호 104동 3, 4호 105동 2, 3호	1층	6	206,250,000	341,250,000	547,500,000	27,375,000	27,375,000	54,750,000	54,750,000	54,750,000	54,750,000	54,750,000	54,750,000	164,250,000
		2층	6	206,250,000	353,850,000	560,100,000	28,005,000	28,005,000	56,010,000	56,010,000	56,010,000	56,010,000	56,010,000	56,010,000	168,030,000
		3 ~ 4층	12	206,250,000	364,950,000	571,200,000	28,560,000	28,560,000	57,120,000	57,120,000	57,120,000	57,120,000	57,120,000	57,120,000	171,360,000
		5 ~ 9층	30	206,250,000	374,050,000	580,300,000	29,015,000	29,015,000	58,030,000	58,030,000	58,030,000	58,030,000	58,030,000	58,030,000	174,090,000
		10층 이상	35	206,250,000	381,250,000	587,500,000	29,375,000	29,375,000	58,750,000	58,750,000	58,750,000	58,750,000	58,750,000	58,750,000	176,250,000

발코니 확장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 시	2026-09-10	입주지정기간
84A	5,860,000	586,000	586,000	4,688,000
84B	4,280,000	428,000	428,000	3,424,000

■ 추가 선택품목(PLUS옵션,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환기형 공기청정 시스템, 가전)의 계약 일정은 계약자 대상으로 별도 통보 예정이며, 세부 품목 및 납부 일정 등은 당사 공식 홈페이지(<https://www.검암역자이르네.com>)에 게시된 입주자모집공고 전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대금, 발코니 확장, 추가 선택품목 (PLUS옵션,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환기형 공기청정 시스템, 가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계좌번호	예금주	금융기관명
분양대금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351-1399-6221-73	신영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농협
구분		계좌번호	예금주	금융기관명
발코니 확장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	351-1399-6239-13	신영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농협
구분		계좌번호	예금주	금융기관명
추가 선택품목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	351-1399-6237-33	신영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농협

- 분양대금, 발코니 확장대금, 추가 선택품목대금은 반드시 상기 예금주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분양대금, 발코니 확장,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는 서로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그 효력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 기간 (약 1개월)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4 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구분	내용
대상자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인천·경기도·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인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5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발표 서비스

구분	내용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7.03.(금) ~ 2026.07.12.(일) (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07.03.(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일정 안내

구분	서류 제출 일정	서류 제출 장소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2026.07.06.(월) ~ 2026.07.07.(화) [2일간]	건본주택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98번지 (검암역자이르네 건본주택, 10:00 ~ 17:00)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제출 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만 가능합니다.)

구분	해당서류	대상	서류제출 유의사항
공통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청약자	세대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청약자의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구성명/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청약자 및 세대구성원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청약자의 혼인·이혼 이력과 모든 가족관계 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생년월일부터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고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분)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추가서류 (해당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단신부임 입증서류	청약자	국내기업·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세대원 중 청약자만 생업 상(단신부임) 해외체류(계속하여 90일 초과) 중일 경우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불가능시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 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해당자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 (청약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 미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 주택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자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대리인 접수 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분)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 상기 모든 서류는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25.)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은 온라인 전자인감증명서는 서류접수 및 계약 시 제출 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공통/추가서류 외에 대리인 접수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 적격확인을 위해 사업주체는 기본 자격확인서류 외 추가의 별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소명기간 내(계약 체결 이전)에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첨자 계약체결 일정 안내

구분	계약체결 일정	계약체결 장소
당첨자 계약체결	2026.07.08.(수) ~ 2026.07.09.(목) [2일간]	건본주택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98번지 (검암역자이르네 건본주택, 10:00 ~ 17:00)

※ **당첨자 이외의 타인 명의로 계약은 불가하며, 계약체결 일정 및 정해진 시간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당첨자 계약체결 구비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만 가능합니다.)

구분	해당서류	대상	서류제출 유의사항
본인 계약 시	계약금 입금 증빙내역	청약자	무통장 입금증 또는 모바일 / 인터넷뱅킹 이체내역 등 (* 현금수납 불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분) ※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기제출한 경우 제외
	자격검증서류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간 내 기제출한 경우 제외)
	추가 개별통지서류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개별통지)
	전자수입인지 (종이문서용)		당사 홈페이지 인자세 납부 안내 참고 [아파트 공급 계약 1부(계약자 분담부분)]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대리인 접수 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분)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 **상기 모든 서류는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25.)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은 온라인 전자인감증명서는 서류접수 및 계약 시 제출 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공통/추가서류 외에 대리인 접수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 적격확인을 위해 사업주체는 기본 자격확인서류 외 추가의 별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소명기간 내(계약 체결 이전)에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일시 :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체결 구비서류 참조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 이체 한도 확인)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 청약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합니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합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9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 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1 제1호 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 :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 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제53조 제9호 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제53조 제9호 나목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85㎡ 이하	5억원
					비수도권
					1억원
					3억원
10	-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주택가격이 1억 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2)를 준용]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8

기타 계약자 안내

-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당첨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습니다.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청약으로 청약 당첨(예비입주자 선정 포함) 시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 등 제한을 받지 않으나,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본 아파트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확인 이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26.05.15.) 및 당사 홈페이지(<https://www.검암역자이르네.com>)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 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당첨취소 세대는 사업주체가 임의 분양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사업주체 현황

구 분	사업주체 및 수탁자	위탁자	시공사
상 호	신영부동산신탁(주)	(주)창해건설	자이에스앤디(주)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6, 8층 (여의도동)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촌로 323, 제10동 19층 1920호 (송도동, 송도 센트로드)	서울특별시 중구 마포로 27, 13층, 14층 (초동, 타워107)
법인등록번호	110111-7126835	120111-0754144	110111-1934557

관리형태지신탁

- 본 분양목적물은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자” (주)창해건설과 토지를 수탁받은 “수탁자” 신영부동산신탁(주) 및 시공사 자이에스앤디(주) 간에 체결한 관리형태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며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 1. 관리형태지신탁계약에 근거하여 수탁자인 신영부동산신탁(주)는 매도자의 지위를 가지는 자로서 신탁재산 및 관리형태지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본 사업관련 실질적 사업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위탁자에게 있습니다.
- 2. 본 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본 공고에 규정된 수탁자(사업주체)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3. 분양계약자에게 본 계약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과 위탁자와 수탁자인 신탁계약 해지 또는 종료되는 시점 중 빠른 시점에, 분양계약상 매도인의 지위 및 제반 권리의무(하자보수 및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이와 관련하여 분양계약자는 수탁자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4. 수탁자는 분양계약과 관련한 매도인(공급자)으로서의 제반 의무(공급금액 반환, 지체상금 배상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음)를 현존하는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담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책임범위에 따라 위탁자 또는 시공사에게 있습니다.
- 5. 신탁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전과 후를 불문하고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보수책임(사용감사전 발생하자 포함)은 시공자인 자이에스앤디(주) 부담합니다.
- 6. 분양대금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정한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상환, 설계비, 감리비 및 그 밖의 부대사업비 등 해당 분양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7. 수탁자와 무관한 분양계약자의 대출결격사유(신용불량, 한도초과 등) 또는 대출금용기관의 사정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분양계약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 수탁자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아니하며 분양계약자의 책임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8.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 사업시행과 관련한 필수적인 계약에 관한 승계계약체결, 자금관리 등 법률상 사업시행자로서 해야하는 형식적인 업무만을 수행하고 분양 계약자들과의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서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4-8번지 일원(검암역세권 B-2BL)에 관한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탁자가 임의로 분양계약자와 체결한 각종 합의서, 약정서 등은 수탁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9.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현장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4-8번지 일원 (검암역세권 B-2블록)
	건본주택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98번지 (검암역자이르네 건본주택) ※ 건본주택 내 주차 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 또는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문의	1833-2595
	공식 홈페이지	https://www.검암역자이르네.com
	수탁자 신영부동산신탁 위탁자 창해건설 시공사 자이 S&D	

-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건본주택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는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